신문사기 가짜뉴스 범죄 엄하게 타격

최고인민검찰원 전형사례 발포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검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징벌한 5건의 신문사기, 가짜뉴스범죄 전형사례를 발포해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허위보도 날조 신문사기, 기자 사칭 신문사기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데 참고를 제공했다.

이번 전형사례들은 허위뉴스 날조사기, 인터넷 유명인 '유료 삭제'형 신문사기 범죄, '여론 봉사협의' 미명으로 기업에 사기갈취 등 내용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신문사기와 가짜뉴스' 관련 사건의 새로운 특점, 새로운 추세 및 처리 난점을 충분히 펼쳐보였다.

근년간 불법분자들이 요언을 날조하고 부정적 정보를 수집하고는 인터넷 전파 등을 리용해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업에 돈이나 재물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2024년에 들어서서 검찰기관은 '가짜뉴스, 신문사기 타격', '검찰기업보호'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내밀면서 기업을 겨냥한 사기협박 등 범죄 및 인터넷 사기협박 등 범죄를 조장한 '인터넷 공격수'(网络水军), 업종 '내부자' 관련 범죄를 중점적으로 징벌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검찰기관은 신문사기와 가짜뉴스 관련 사건 도합 159건, 423명의 인원을 처리했다.

전문행동을 전개한 후 검찰기관은 계속 '신문사기, 가짜뉴스 타격' 방안 요구를 관철, 시달하고 법에 의해 신문사기, 가짜뉴스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며 협력, 배합을 일층 강화했다. 관련 범죄 배후의 산업사슬, 리익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주관부문에서 기제를 건전히 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원천을 통제하며 공동으로 일체화 관리를 추진하도록 독촉함으로써 량호한 문화전파 질서와 법치화 상업환경 구축을 적극 추동했다.

/ 신화사

모멘트에서 폭죽 판매 ? 위법행위 !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모멘트, 위챗그룹방도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는데 설맞이용품, 폭죽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멘트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폭죽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폭죽 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흑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키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생산, 경영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운송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운송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폭죽을 불법으로 생산, 운영 또는 운송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재(转载)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도와 이런 광고를 전재하는데 만약 판매한 폭죽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와 전재한 사람이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인터넷 – 조문판

고속도로에서 후진했다가 벌점 12 점 !

고속도로에서 길을 재촉하다가 교차로 출구를 놓쳤다면 차를 후진할 수 있을가? 누구나 리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행위가 최근 연변에서 발생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경찰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후진한 운전자를 발견하고 벌금 200원, 벌점 12점의 처벌을 안겼다.

최근, 연길분국 경찰들은 영상감시카메라 순찰 시, 한 외지번호판의 자가용차가 훈춘—울란호트고속도로 91키로메터 부근에서 좌우로 비틀며 'S'자 형태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했다. 후진후 그 자가용차는 연길 북출구 진입로(出口匝道)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후진 과정에 많은 차량들이 옆으로 '스치듯' 통과하면서 자못 위험해 보였다. 지휘중심에서는 즉시 경찰을 파견하여 해당 차량을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형모는 당시 왕청에 갔다가 연길로 돌아오는 길이였는데 조심하지 않고 출구를 지나치자 후진했다고 이실직고했다. 경찰들은 형모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벌금 200원, 면허증 12점을 차감하며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고속도로 경찰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량은 앞의 차량이 후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차들의 주행속도가 보편적으로 빠르고 후진하는 차량 발견 시 반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추돌,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심지어 련쇄추돌 등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들은 부주의로 출구를 지나칠 경우, 후진이나 역주행을 절대 삼가하고 꼭 다음 출구를 찾아 고속도로를 벗어나야 한다.

/ 리전기자

차용증에 송달주소 약정했다면 소송진행 시간 절약할 수 있다 ?!

민사소송 특히는 민간대차분쟁에서 많은 차용인(借款人)들은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고의로 련락을 끊어 법원 송달에 곤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소송진행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신속히 승소하려면 '소송서류의 송달주소'가 들어있는 완벽한 차용증 한장만 있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차용증에 소송서류의 송달주소를 약정하면 송달방식이 불분명하여 법원 송달로 인한 소송진척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게 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기 전 쌍방이 이미 송달주소를 약정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소를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확인 주소로 삼게 된다. 송달장, 기소장 등을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메일을 반송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확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정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기소하기 힘든 상황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차용증에서 송달주소를 어떻게 약정하는가?

당사자는 차용증에서 차용인의 상세한 주소, 련락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방식을 밝혀 각종 문서 송달주소로 해야 한다. 만약 변경이 있을 경우 차용인은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대출인(出借人)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법률보급팁 :
'송달방식'은 소송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방식에는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5가지가 있다. 많은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련락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환장과 기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원 사건은 압력이 비교적 커 직접송달이나 위탁송달이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기에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30일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한다.

/ 리전기자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중국 기업, 한국에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자료들은 ?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등록비자업무 대행기관으로 전문써비스 안내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률 및 정책에 처음 접하는 기업들에는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D-7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 법무부 출입국 등록비자업무 대행기관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비자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 변호사팀 전문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출입국업무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D-7 비자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지사에 파견한 직원의 D-7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몇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위해 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사에서 근무할 직원에 대해 D-7 파견 비자를 신청한다. D-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사 설립과 D-7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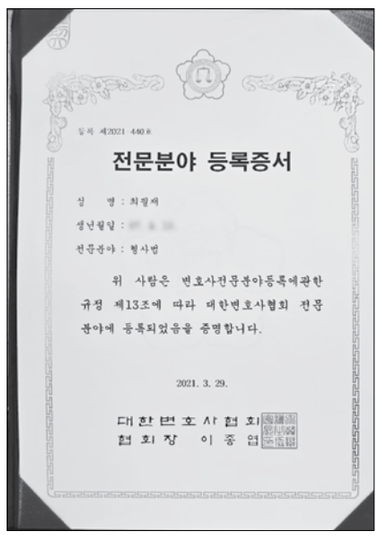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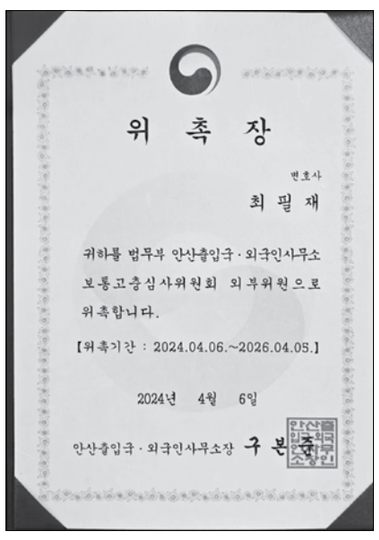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에게 발급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분야 등록증서(좌)와 한국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우)

기자는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을 통해 〈해외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다.

〈해외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1. 국내 지점 설치 신고(지정 거래 외국환은행)

*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 업무, 할부금융 등 금융관련업무 / 증권 / 보험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본국 번역공증 필요)
- 회사 설립 사항 증명서, 정관 등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3) 지사설치신고위임장(본국 번역공증 필요)
4) 국내 지사장 임명장
5)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6) 국내에서 영위하고저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설명서
2. 국내 지사 법인등기
1) 한국 지사 설립에 관한 리사회 의사록(본국 번역공증 필요)
- 한국 영업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한국 영업소 주소 및 한국에 영업소를 설립한다는 내용 기재
2) 해당 외국 기업 대표자 려권 사본
3) 한국 대표자 려권 사본 (D-7 주재 비자 필수)
4) 법인 등기에 관한 위임장
3. 사업자 등록
1) 국내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사업자 등록에 관한 위임장(대리인이 신고 시)

〈파견 직원 D-7 비자 발급 관련 서류〉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위한 비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려권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필수전문인력임을 립증하는 서류(리력서 / 경력증명서 등)
6)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7) 파견명령서
8) 국내지점 등 설치 립증 서류(국내 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9) 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립증하는 서류
- 신규 지사인 경우 지사 또는 련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10)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유경봉기자
련계전화 :13604447151

시례로 법 말하기 -17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다가 행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의 열쇠를 압류할 수 있는가?

사례

리씨는 자동차를 모 은행 문앞에 정차했는데 후방상황을 관찰하지 않고 문을 열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는 염씨와 부딪쳐 염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었다. 리씨는 차에서 내려 살펴본 후 염씨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떠나려고 했다. 염씨는 리씨의 차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염씨의 행위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염씨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아 상황이 긴급하고 제때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필요한 범위에서 침해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즉시 관계 국가기관에 청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야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는가?

"점포를 임대하고 나서 야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봤어요.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 테니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

"부근의 몇개 점포는 모두 리윤이 있다. 리윤이 생기는 것은 음식의 색, 향, 맛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게다가 원고는 하루 영업하고 이틀을 쉬고 있으니 나는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

최근, 장춘시이도구인민법원 민1정 재판장 오국홍은 임대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피고 모 회사는 이도구 모 지역에 야시장을 개설했다. 원고 왕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이 회사와 〈야시장 임대협의〉를 체결하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로천점포를 임대하여 해산물을 팔기로 약정했다. 협의가 체결된 후 왕모는 이 회사에 1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왕모는 경영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간헐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왕모는 이 회사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반환할 것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거절했다.

왕모는 야시장의 리용객은 적고 게다가 회사측이 적극적인 선전을 하지 않았기에 회사의 부작위 행위로 자신의 장사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선전 동영상을 제출하고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켰다. 그중 왕모의 로천점포 주위의 해산물 바비큐 등 점포의 주인들은 하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왕모와 이 회사가 체결한 〈야시장 임대협의〉는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 표시이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관련 협의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왕모와 이 회사간에 임대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쌍방은 계약 약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협의는 주로 로천점포의 임대기간, 임대비용 및 쌍방이 해당 로천점포의 관리, 사용 등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것이며 야시장 리용객에 대한 보증 및 회사가 왕모 자신의 경영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등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 모 회사는 이미 기한내에 왕모에게 로천점포를 교부했고 일상관리와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 관련 협의에도 법정 해지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리행이 완료되였기에 왕모의 계약 해지, 임대료 반환에 대한 주장은 사실 및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류형의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만약 서뿔리 약정한 후에 계속 의무를 리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협상에서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 도시석간